

1. 개정이유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 개선(안 제10조)

- 1)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2)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 개인하수의 처리, 폐수의 처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경우

가.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 또는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운전 또는 효율적인 폐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등의 연구 또는 시험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 제5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 제6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계획(운영 시설의 경우 운영 현황)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계획)
2. 하수의 활용 목적, 하수 공급량 등 활용계획

제13조의2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u><신 설></u>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현행 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 계 지방환경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u> 7. <u>개인하수의 처리, 폐수의 처 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 의한 경우</u> 가. 「하수도법」 제2조제13 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시운전 또는 효율적 인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현 행	개 정 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u>지방환경관서의 장</u>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u>제1항 제5호</u>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u>제7항</u>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	<u>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 1. <u>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계획)</u> 2. <u>하수의 활용 목적, 하수 공급량 등 활용계획</u>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u>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u>----- ----- -. ⑦ ----- <u>제1항 제5호 및 제6호</u>----- ----- ----- ----- -. ⑧ ----- ----- - <u>제9항</u>----- ----- -----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 ----- ----- ----- ----- ----- ----- ----- ----- ----- ----- ----- ----- ----- ----- ----- <u>사업자등록증</u> ----- ----- <u>사업자등록증</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